

##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신청 기관	법인의 명칭	기관의 종류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설치 연월일		
	주소			
	직원 수(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명(      명)	아동 정원/현원	/      명
	예산	수입 총액	원 / 지출 총액	원
설비	사무실	m <sup>2</sup>	상담실	m <sup>2</sup>
	그 밖의 설비		심리검사·치료실	m <sup>2</sup>

「아동복지법」 제4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 1부</li> <li>2.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1부</li> <li>3. 아동복지시설의 신고증 사본(아동복지시설인 경우만 제출합니다)</li> <li>4.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1부</li> <li>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li> <li>6.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평면도(층별·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li> <li>7.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각 1부</li> </ol>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li> <li>2. 건물등기사항증명서</li> <li>3. 토지등기사항증명서</li> <li>4. 건축물대장</li> </ol>	

처리절차

